## 청원 원문

## [청워의 취지]

학교 밖 청소년이 대학에 진학한 후 자퇴를 한 경우 발생하는 복지사각지대 해소

## [청원의 이유 및 내용]

현재 여성가족부에서는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 해당 법률에 따르면 '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한 과 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' 등을 학교 밖 청소년으로 정의합 니다. 따라서 고등학교를 진학하지 아니하거나 자퇴, 제적 등의 이유로 검정고시 를 치른 청소년은 학교 밖 청소년에 해당합니다.

하지만 검정고시를 치른 이후 고등학교에 대하여 상급학교 (대학교 등) 에 진학했다가 자퇴를 한 경우는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했다고 볼 수 없음은 물론이며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모두 정상적으로 수료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부에서는 해당 경우가 학교 밖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아 지원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.

예를 들어 9세의 청소년이 검정고시를 통해 대학에 진학했지만 부적응의 이유로 자퇴를 한 경우에도 여성가족부의 해석으로는 해당 청소년은 학교 밖 청소년이 아니기 때문에 초, 중, 고등학교를 대신하여 다양한 활동을 지원해주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복지제도를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.

이에 학교 밖 청소년의 정의를 더욱 폭 넓게 하여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들을 보호하고자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 2조 2항에 '학교 밖 청소년으로서 대학에 진학하였지만 자퇴하거나 제적된 청소년'과 같은 정의를 추가하여 학교 밖 청소년 출신으로 대학에 진학했다가 자퇴한 청소년도 학교 밖 청소년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을 청원합니다.